|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과 관련된 세수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3호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이하 “영개증”이라 약칭) 시범시행업무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 세수징수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신고기간  1.1 2016년 5월 1일부터 영개증 시범시행범위에 해당되는 신규 납세자(이하 “시범시행 납세자”로 약칭)의 경우 2016년 6월분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은 2016년 6월 27일까지 연장한다.  1.2 업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국세국”이라 약칭)은 2015년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2016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3 분기별 신고를 실행하는 기존 영업세 납세자일 경우 2016년 5월 신고기간 내, 주관지세기관(지방세무기관)에 4월 귀속분에 해당하는 영업세 세금을 신고한다. 2016년 7월 신고기간 내, 주관국세기관에 5월 및 6월 귀속분에 해당하는 증치세 세금을 신고한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  2.1 시범시행 납세자는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하여야 한다.  2.2 본 공고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영개증 시범시행 실시 전(이하 “시범시행실시 전”이라 약칭)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과세행위”라 약칭)의 연 과세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시범시행 납세자는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시범시행 납세자는 시범시행실시 전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환산한다.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 =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과세행위 영업액 합계 ÷ (1+3%)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하는 시범시행 납세자는 그 과세행위 영업액은 공제하기 전의 영업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시범시행실시 전, 시범시행 납세자에게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양도의 거래액은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2.3 시범시행실시 전 이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과세행위를 겸하고 있는 시범시행 납세자일 경우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수속을 재차 할 필요가 없으며, 주관국세기관은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2.4 시범시행실시 전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시범시행 납세자이고, 회계결산이 건전하며,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할 수 있다.  2.5 시범시행실시 전, 시범시행 납세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는 성국세국이 본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등기 조치를 취한다.  2.6 시범시행실시 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범시행 납세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제22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관리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18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하여야 한다. 영개증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과세행위 공제항목이 있는 시범시행 납세자일 경우에는 그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은 공제하기 전의 판매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게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양도의 판매액은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2.7 시범시행 납세자가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 및 용역판매액과 과세행위 판매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표준을 따로 적용한다.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를 겸하며, 연 과세판매액이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규정표준을 초과하고 또한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위와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  2.8 시범시행 납세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한 후, 증치세 탈세 및 수출환급세 편취 및 증치세 공제증빙 허위발급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그에 대해 6개월간 납세특별기간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 사용  3.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관리 새 시스템(이하 “새 시스템”이라 약칭)을 사용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2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용역으로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또는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3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롤식) 사용 전, 납세자는 새 시스템을 통해 국세기관이 발부한 현행 롤식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3.4 입장료, 도로(교량)통행료 세금계산서, 정액 세금계산서, 고속버스 세금계산서 및 중고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는 계속 사용한다.  3.5 종합납세를 채택한 금융기구, 성 및 자치구 관할 소재지 지시(地市)이하 분지기구는 지시급(地市级)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수령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관할 구현(县及) 및 이하 분지기구는 직할시, 계획단열시에서 통일적으로 수령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3.6 국세기관 및 지세기관은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한다.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6장의 먹지를 사용하여 대체 발행하고,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는 5장의 먹지를 사용하여 대체 발행한다.  3.7 2016년 5월 1일부터 지세기관은 더 이상 시범시행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시범시행 납세자가 이미 지세기관이 인쇄•제작한 세금계산서 및 본 단위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국세국의 확정을 거쳐 적절하게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2016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지세기관에 영업세를 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2016년 5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보충발행 해야 할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세무총국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를 발행할 수 있다.  4.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4.1 세무총국은 <상품 및 서비스 세수분류와 코드번호(시행)>(이하 “코드번호”라 약칭, 첨부 참고)를 집필하였으며, 또한 새 시스템에서 코드번호와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였다. 2016년 5월 1일부터 새 시스템 추진범위에 해당되는 시범시행 납세자 및 신규 증치세 납세자는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응되는 코드번호를 선택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및 광동성에서 이미 코드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 전 세금계산서발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야 한다. 5일 1일 전 이미 새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8월 1일 전 세금계산서발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야 한다.  4.2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차액징수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납부하고, 전액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재정부 및 세무총국 별도규정제외) 납세자가 자체 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새 시스템 중 차액징수 세금계산서 기능을 통해 세금 포함 판매액(또는 세금 포함 평가가치액)과 공제액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과 세금 불포함 금액이 계산되며, 비고란에 자동으로 “차액징수”글자가 인쇄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과세행위가 섞여 발행되서는 아니 된다  4.3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자체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건축서비스 발생지의 현(시, 구)명칭과 항목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4.4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자체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과세용역 및 서비스명칭”란에 부동사명칭 및 주택소유권증서번호(주택소유권증서가 없는 경우 기입하지 않음)를 기입하고, “단위”란에는 면적단위를 기입하며, 비고란에는 부동산의 상세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5 부동산을 임대하는 납세자는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비고란에 부동산의 상세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6 개인임대주택이 1.5% 차감징수 우대정책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자체 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새 시스템 중 징수률 1.5% 차감징수 세금계산서 기능을 통해 세금 포함 판매액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과 세금 불포함 금액이 계산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과세행위가 섞여 발행되서는 아니 된다.  4.7 세무기관이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할 경우 “판매측 계설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세수완납증 마크 및 번호 또는 시스템 납세영수증 번호(면세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음)를 기입한다.  4.8 국세기관은 현(시, 구)를 범주를 벗어나 부동산 경영임대서비스 및 건축서비스를 제공한 소규모 납세자(기타개인 포함하지 않음)에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YD”글자가 자동 인쇄된다.  5.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을 폐지하는 납세자범위 확대  5.1 납세신용B등급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판매측의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화물운수업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 이하 동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스캔인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본 성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제 또는 수출 환급(퇴)세 신고용 증치세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캔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5.2 2016년 5월 1일 신규로 영개증 시범시행에 해당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2016년 5월부터 7월 기간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본 성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제 또는 수출 환급세 신고용 증치세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캔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2016년 8월부터 납세신용 등급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6. 기타납세사항  6.1 기존의 지시(地市)1급 기구로서 영업세를 종합 납부하는 금융기구는 영개증 이후 계속 지시(地市)1급 기구로서 증치세를 종합 납부한다.  1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과 같은 범위 내 금융기구는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재정청(국) 비준을 거쳐 총기구에서 종합하여 총기구 소재지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6.2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재화판매,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의 판매액과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액을 나누어 결산하여야 한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재화판매,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을 각각 향유할 수 있다.  6.3 분기별 납세신고를 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실제경영기간이 1분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경영 월별로 계산하여 당기에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의 판매한도액을 향유할 수 있다.  본 공고 제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분기별 납세를 시범시행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2016년 7월 납세신고 시, 신고하는 2016년 5월 및 6월 증치세 과세판매액 중에서 재화판매,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의 판매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을 각각 향유할 수 있다.  6.4 기타 개인이 선수금 형식으로 부동산을 임차하여 취득한 선수임대수입은 선수금에 대응되는 임대기간 내 평균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안분 후 월 임대수입이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7. 본 공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세무총국의 최신판 부동산판매 일괄세금계산서와 건축업 일괄세금계산서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173호),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에 따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75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상품 및 서비스 세수분류와 코드번호 시범시행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세총함[2016]5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첨부: 상품 및 서비스 세수분류와 코드번호 (시범시행) (전자파일)  국가세무총국  2016년4월1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3号  　　为保障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简称营改增）试点工作顺利实施，现将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公告如下：  　　一、纳税申报期  　　（一）2016年5月1日新纳入营改增试点范围的纳税人（以下简称试点纳税人），2016年6月份增值税纳税申报期延长至2016年6月27日。  　　（二）根据工作实际情况，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以下简称省国税局）可以适当延长2015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间，但最长不得超过2016年6月30日。  　　（三）实行按季申报的原营业税纳税人，2016年5月申报期内，向主管地税机关申报税款所属期为4月份的营业税；2016年7月申报期内，向主管国税机关申报税款所属期为5、6月份的增值税。  　　二、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  　　（一）试点纳税人应按照本公告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  　　（二）除本公告第二条第（三）项规定的情形外, 营改增试点实施前（以下简称试点实施前）销售服务、无形资产或者不动产（以下简称应税行为）的年应税销售额超过500万元的试点纳税人，应向主管国税机关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手续。  　　试点纳税人试点实施前的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按以下公式换算：  　　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连续不超过12个月应税行为营业额合计÷（1+3％）  　　按照现行营业税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试点纳税人，其应税行为营业额按未扣除之前的营业额计算。  　　试点实施前，试点纳税人偶然发生的转让不动产的营业额，不计入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  　　（三）试点实施前已取得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并兼有应税行为的试点纳税人，不需要重新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手续，由主管国税机关制作、送达《税务事项通知书》，告知纳税人。  　　（四）试点实施前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未超过500万元的试点纳税人, 会计核算健全，能够提供准确税务资料的，也可以向主管国税机关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  　　（五）试点实施前，试点纳税人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可由省国税局按照本公告及相关规定采取预登记措施。  　　（六）试点实施后，符合条件的试点纳税人应当按照《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一般纳税人管理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18号）及相关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按照营改增有关规定，应税行为有扣除项目的试点纳税人，其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按未扣除之前的销售额计算。  　　增值税小规模纳税人偶然发生的转让不动产的销售额，不计入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  　　（七）试点纳税人兼有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和应税行为的，应税货物及劳务销售额与应税行为销售额分别计算，分别适用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标准。  　　兼有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和应税行为，年应税销售额超过财政部、国家税务总局规定标准且不经常发生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和应税行为的单位和个体工商户可选择按照小规模纳税人纳税。  　　（八）试点纳税人在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后，发生增值税偷税、骗取出口退税和虚开增值税扣税凭证等行为的，主管国税机关可以对其实行6个月的纳税辅导期管理。    三、发票使用  　　（一）增值税一般纳税人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和应税行为，使用增值税发票管理新系统（以下简称新系统）开具增值税专用发票、增值税普通发票、机动车销售统一发票、增值税电子普通发票。  　　（二）增值税小规模纳税人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月销售额超过3万元（按季纳税9万元），或者销售服务、无形资产月销售额超过3万元（按季纳税9万元），使用新系统开具增值税普通发票、机动车销售统一发票、增值税电子普通发票。  　　（三）增值税普通发票（卷式）启用前，纳税人可通过新系统使用国税机关发放的现有卷式发票。  　　（四）门票、过路（过桥）费发票、定额发票、客运发票和二手车销售统一发票继续使用。  　　（五）采取汇总纳税的金融机构，省、自治区所辖地市以下分支机构可以使用地市级机构统一领取的增值税专用发票、增值税普通发票、增值税电子普通发票；直辖市、计划单列市所辖区县及以下分支机构可以使用直辖市、计划单列市机构统一领取的增值税专用发票、增值税普通发票、增值税电子普通发票。  　　（六）国税机关、地税机关使用新系统代开增值税专用发票和增值税普通发票。代开增值税专用发票使用六联票，代开增值税普通发票使用五联票。  （七）自2016年5月1日起，地税机关不再向试点纳税人发放发票。试点纳税人已领取地税机关印制的发票以及印有本单位名称的发票，可继续使用至2016年6月30日，特殊情况经省国税局确定，可适当延长使用期限，最迟不超过2016年8月31日。  　　纳税人在地税机关已申报营业税未开具发票，2016年5月1日以后需要补开发票的，可于2016年12月31日前开具增值税普通发票（税务总局另有规定的除外）。  　　四、增值税发票开具  （一）税务总局编写了《商品和服务税收分类与编码（试行）》（以下简称编码，见附件），并在新系统中增加了编码相关功能。自2016年5月1日起，纳入新系统推行范围的试点纳税人及新办增值税纳税人，应使用新系统选择相应的编码开具增值税发票。北京市、上海市、江苏省和广东省已使用编码的纳税人，应于5月1日前完成开票软件升级。5月1日前已使用新系统的纳税人，应于8月1日前完成开票软件升级。  （二）按照现行政策规定适用差额征税办法缴纳增值税，且不得全额开具增值税发票的（财政部、税务总局另有规定的除外），纳税人自行开具或者税务机关代开增值税发票时，通过新系统中差额征税开票功能，录入含税销售额（或含税评估额）和扣除额，系统自动计算税额和不含税金额，备注栏自动打印“差额征税”字样，发票开具不应与其他应税行为混开。  　　（三）提供建筑服务，纳税人自行开具或者税务机关代开增值税发票时，应在发票的备注栏注明建筑服务发生地县（市、区）名称及项目名称。  　　（四）销售不动产，纳税人自行开具或者税务机关代开增值税发票时，应在发票“货物或应税劳务、服务名称”栏填写不动产名称及房屋产权证书号码（无房屋产权证书的可不填写），“单位”栏填写面积单位，备注栏注明不动产的详细地址。  　　（五）出租不动产，纳税人自行开具或者税务机关代开增值税发票时，应在备注栏注明不动产的详细地址。  　　（六）个人出租住房适用优惠政策减按1.5%征收，纳税人自行开具或者税务机关代开增值税发票时，通过新系统中征收率减按1.5%征收开票功能，录入含税销售额，系统自动计算税额和不含税金额，发票开具不应与其他应税行为混开。  　　（七）税务机关代开增值税发票时，“销售方开户行及账号”栏填写税收完税凭证字轨及号码或系统税票号码（免税代开增值税普通发票可不填写）。  　　（八）国税机关为跨县（市、区）提供不动产经营租赁服务、建筑服务的小规模纳税人（不包括其他个人），代开增值税发票时，在发票备注栏中自动打印“YD”字样。  　　五、扩大取消增值税发票认证的纳税人范围  　　（一）纳税信用B级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销售方使用新系统开具的增值税发票（包括增值税专用发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机动车销售统一发票，下同），可以不再进行扫描认证，登录本省增值税发票查询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者出口退税的增值税发票信息，未查询到对应发票信息的，仍可进行扫描认证。  　　（二）2016年5月1日新纳入营改增试点的增值税一般纳税人，2016年5月至7月期间不需进行增值税发票认证，登录本省增值税发票查询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者出口退税的增值税发票信息，未查询到对应发票信息的，可进行扫描认证。2016年8月起按照纳税信用级别分别适用发票认证的有关规定。    六、其他纳税事项  　　（一）原以地市一级机构汇总缴纳营业税的金融机构，营改增后继续以地市一级机构汇总缴纳增值税。  　　同一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范围内的金融机构，经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 国家税务局和财政厅(局)批准，可以由总机构汇总向总机构所在地的主管国税机关申报缴纳增值税。  　　（二）增值税小规模纳税人应分别核算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的销售额，和销售服务、无形资产的销售额。增值税小规模纳税人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月销售额不超过3万元（按季纳税9万元），销售服务、无形资产月销售额不超过3万元（按季纳税9万元）的，自2016年5月1日起至2017年12月31日，可分别享受小微企业暂免征收增值税优惠政策。  （三）按季纳税申报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实际经营期不足一个季度的，以实际经营月份计算当期可享受小微企业免征增值税政策的销售额度。  　　按照本公告第一条第（三）项规定，按季纳税的试点增值税小规模纳税人，2016年7月纳税申报时，申报的2016年5月、6月增值税应税销售额中，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的销售额不超过6万元，销售服务、无形资产的销售额不超过6万元的，可分别享受小微企业暂免征收增值税优惠政策。  　　（四）其他个人采取预收款形式出租不动产，取得的预收租金收入，可在预收款对应的租赁期内平均分摊，分摊后的月租金收入不超过3万元的，可享受小微企业免征增值税优惠政策。  　　七、本公告自2016年5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使用新版不动产销售统一发票和新版建筑业统一发票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6〕173号）、《国家税务总局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75号）、《国家税务总局关于开展商品和服务税收分类与编码试点工作的通知》（税总函〔2016〕56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商品和服务税收分类与编码（试行）（电子件）](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083705/part/2086381.xls)  国家税务总局  2016年4月19日 |